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1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박영한, 고광민,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춘선, 서상열, 신동원,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6
명)

1. 제안이유

-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함
- 또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남산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조)
- 나.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생태환경 보전 사업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라.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수입금의 사용,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 마.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19조)

바. 금지행위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궤도운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④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

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8조(생태환경 보전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여가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3.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4.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제10조(남산공원 추진사항 공표) ① 시장은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산공원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시사점
2. 남산 생태환경 현황 및 시민이용 현황
3.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생태여가 공공재원 마련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제14조(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제13조 제2호의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내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둔다.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산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산공원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설정에 대한 사항
2. 남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

- 4. 남산공원 여가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 5. 그 밖에 남산 및 남산 주변부의 보전과 관리, 시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공무원 5명 내외

2. 위촉위원 : 환경·생태·자연성 회복·도시·경관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등

제20조(금지행위 및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남산공원 내에서 공원시

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 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생태환경 보전 사업), 제9조(여가공간 조성 사업) 및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직접 수행 시 추가재정 소요는 없으나 용역을 통한 신규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음

[참고] 2024년도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8조 및 제 11조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12,192,000
제9조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1,998,690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2,544,731
	남산 하늘숲길 조성	1,502,500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	160,000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나.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의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의원 4명은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 남산발전위원회 = 24,5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0,000천원+4,500천원

- 참석수당 = 20,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0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5명(공무원)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붙임 1] 2024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남산 추진(생태회복 등)
 - 남산 곤돌라 도입 추진(설계 및 공사)
 - 남산 셋길 이용 관리
- 사업기간 : 2024.1. ~ 2025.1

[붙임 2] 2024년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위 치 :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 2가)
- 규 모 : 총면적 79,937㎡ (전통정원 72,003㎡ / 전통가옥 7,934㎡)
 - 운영방법 : 전통정원 - 시 직영(문화재관리과) / 전통가옥 - 위탁운영
 - 주요시설 : 전통가옥 5동(시 민속문화재 4, 기타 1), 천우각, 서울천년타임캡슐 등
- 사업내용 : 전통정원 시설 및 녹지대 등 유지관리 / 전통가옥 민간위탁 운영
 - 전통정원 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관리(기존시설물 정비 및 꽃묘 식재 등)
 - 남산골한옥마을(전통가옥) 민간위탁 운영 및 유지 관리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붙임 3] 2024년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
- 규 모 : 2,935㎡
- 주요시설 : 공연장, 야외마당, 국악체험실, 연습실, 카페 등
- 사업내용 : 청년국악인 육성 사업 등 국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2,544백만원

[붙임 4] 2024년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 치 : 남산(용산구 이태원동 259 일대)
- 사업기간 : '24. 1. ~ '24. 12.
- 소요예산 : 16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 사업의 주요내용 : 팔도소나무단지 등 연계하여 전국 대표 수종 식재한 숲정원 조성

[붙임 5] 2024년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 치 : 남산(남측 사면, 남산도서관 ~ 야외식물원)
- 사업기간 : '24. 1. ~ '24. 12.
- 소요예산 : 1,503백만원(시설비 1,500백만원, 시설부대비 2.5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 사업의 주요내용 : 생태복원, 하늘숲길, 무장애숲길 등 조성